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엔텀네트웍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시큐아이 DDOS/방화벽 장비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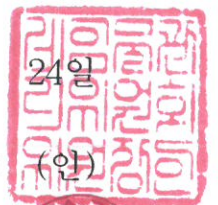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금구백육십육만삼천오백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6월 24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엔텀네트웍스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등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넷앤씨큐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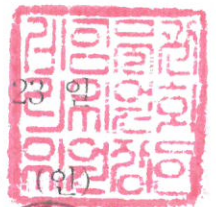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 1,100,000 원, 부가세 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06월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넷앤씨큐)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마크애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위변조방지 솔루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642,000원/3개월기준/VAT포함가)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07월 08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마크애니)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DEXT5 Upload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라온위즈 주식회사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DEXT5 Upload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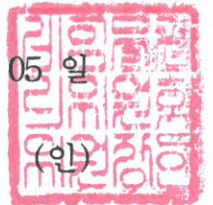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6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07 월 05 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라온위즈 주식회사)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1년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 업 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한아아이티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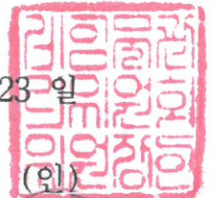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4,07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6 월 23 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한아아이티)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발주기관(A)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B) : 엘에스정보기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의 DBSAFER (유지관리항목)에 대하여 “A”는 발주자로서 “B”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B”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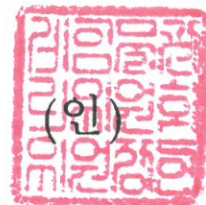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A”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B”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A”와 “B”가 협의하는 금액 ₩5,400,000원(금오백사십만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B”는 이 약정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B”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A” : 게임물관리위원회



“B” : 엘에스정보기술(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클립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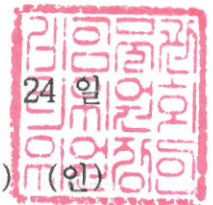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607,000원 /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06 월 24 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클립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코디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30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06월 23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코디얼)



물품공급 ·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발주기관(A)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B) : 엘에스정보기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의 KsignSecureDB (유지관리항목)에 대하여 “A”는 발주자로서 “B”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B”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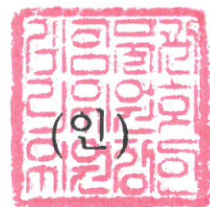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A”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B”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A”와 “B”가 협의하는 금액 ₩1,236,000원(금일백이십삼만육천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B”는 이 약정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B”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A” : 게임물관리위원회



“B” : 엘에스정보기술(주)



물품공급 ·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2021년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발주기관(A)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B) : 엘에스정보기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의 블루엑스레이 (유지관리항목)에 대하여 “A”는 발주자로서 “B”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B”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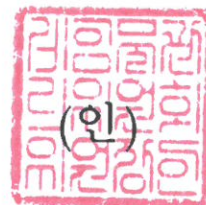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A”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B”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A”와 “B”가 협의하는 금액 ₩1,530,000원(금일백오십삼만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B”는 이 약정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B”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A” : 게임물관리위원회



“B” : 엘에스정보기술(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등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아이젝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등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455,640원 (VAT별도))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06 월 23 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아이젝스)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발주기관(A)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B) : 엘에스정보기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의 LanKeeper, S2DDS (유지관리항목)에 대하여 “A”는 발주자로서 “B”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B”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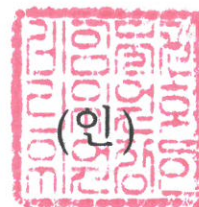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A”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B”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A”와 “B”가 협의하는 금액 ₩10,164,000원(금일천십육만사천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B”는 이 약정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B”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A” : 게임물관리위원회



“B” : 엘에스정보기술(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시큐브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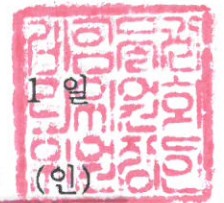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1,540,000원, 7개월기준)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6 월 1 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시큐브)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소프트보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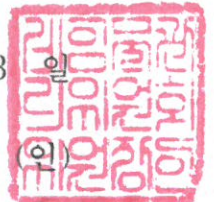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3,630,000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6 월 23 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소프트보울) (인)



물품공급 · 기술지원협약서

- 사 업 명 : 2021년 상용소프트웨어 통합유지관리 용역사업
- 발주기관(A) : 게임물관리위원회
- 제조사 또는 공급사(B) : 엘에스정보기술(주)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사업의 Clouidium (유지관리항목)에 대하여 “A”는 발주자로서 “B”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B”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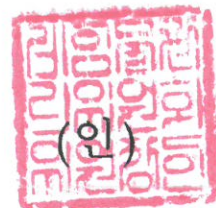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A”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의 규정에 따른 “B”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A”와 “B”가 협의하는 금액 ₩12,484,000원(금일천이백사십팔만사천원/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B”는 이 약정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B”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확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A” : 게임물관리위원회



“B” : 엘에스정보기술(주)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등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지슨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등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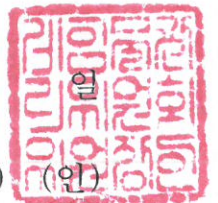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삼백팔십오만원/부가세 별도)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5 월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지슨)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빅스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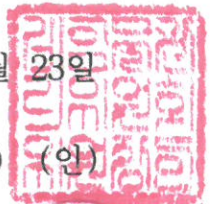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일백구십이만오천원, ₩1,925,000)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년 6월 23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빅스소프트) (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사이넵 문서뷰어)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사이넵소프트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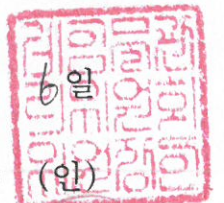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2,745,600 원)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21 년 7 월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사이넵소프트)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 사업명 : 상용SW 통합 유지관리 용역
- 발주기관 : 게임물관리위원회
- 사업자(제조사 또는 공급사) : 주식회사 인컴즈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상기 사업자가 수행중인 (인터넷디스크 솔루션 유지보수)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발주자로서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을 보유하거나 제조할 수 있는 제조사(또는 공급사)로서 위 사업의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원활히 제공토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 및 협약의 범위) ①이 협약은 위 사업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에 한해 사용범위를 제한한다.

②위 물품 중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낙찰자에게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해야하는 범위는 규격서(시방서)에 반영된 특수한 능력·품질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부분으로 한다.

③제2항에 의한 특수한 능력·품질 등의 납품능력이 요구되는 범위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 및 판단에 따른다.

제3조(협약금액) 제2조에 따른 제조사 또는 공급사의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 범위에 대한 협약금액은 특수능력·품질 부분의 비중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제조사 또는 공급사가 협의하는 금액 (660,000원_VAT포함)으로 한다.

제4조(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 발급) 위 사업의 낙찰자와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이 약정의 범위 및 공정한 거래질서 등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을 하기로 협의하고, 제조사 또는 공급사는 물품공급 또는 기술지원협약서를 낙찰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014년 6월 23일

발주기관 (게임물관리위원회) (인)

제조사 또는 공급사 (주식회사 인컴즈) (인)